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군 인 재 해 보 상 법 시 행 령 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경두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문체계 재구성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라 상이연금, 장애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등 재해보상 관련 조문체계를 재구성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나.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청구 절차 마련

(안 제41조~제42조)

분할연금 산정 시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분할연금 청구 절차 등 규정

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일부 추가(안 별표2)

현재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과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거의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평소의 질병 등과 직무수행과의 경합 등 일부 구체적 기준 추가 반영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3. 3. ~ 2020. 4.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령안과 함께 추진됨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령안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사람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인연금법」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란 각각 제34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증명은 법 제2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1.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인 사실

2. 「군인연금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실

제3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무와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할 경우

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

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구성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회 위원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인재해보상업무를 직접 소관업무로 하는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심의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국방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면직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

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제9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①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급여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급여 사유의 발생 사실, 복무기간, 그 밖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이 결정하는 급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장관은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액을 결정하여 급여의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 기준일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직한 날의 전날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 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조제2호가목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
2. 법 제7조제3호가목에 따른 상이유족연금(이하 "상이유족연금"이라 한다)
3. 법 제7조제3호나목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4. 법 제7조제3호다목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상이연금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순직유족연금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① 유족 중 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

임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수령을 위임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2조(급여의 지급자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1조에 따라 급여를 받으려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특례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확인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군인 또는 군인이

었던 사람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친족 또는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그 급여를 지급하여 군인이었던 사람의 분묘·제기(祭器)·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게 한다.

④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제2호의 사망보상금은 제외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의 3년분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36 -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1/36
2.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및 사망보상금: 원급여액의 2분의 1
3.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급여: 원급여액 전액

제13조(연금지급시기)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하고,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매월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6월·9월·12월마다 똑같이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 또는 지급

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그 달까지의 분
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연금증서의 발급) ① 국방부장관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
(이하 "연금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증서를 발급받은 연금수급권자는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연금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15조(해외이주 및 국적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연금수급권자
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하여 연금을 청산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제16조(급여의 환수)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급여
액과 이에 가산할 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여액: 법 및 이 영에 따라 지급한 금액
2.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
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
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법 제1
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로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
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 계산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때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

일까지로 하되,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환수비용: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방부장관(사망보상금 환수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산정하는 금액

② 급여를 받았던 사람 또는 제73조제5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신고 또는 통보,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 환수금 반납 고지서(이하 "반납고지서"라 한다)를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의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국고금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납입받은 국고금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영수확인통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분할납부할 1회당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자를 면제한다.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4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제4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내지 아니한 경우와 제6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17조(결손처분)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명하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

이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3자의 손해배상과 조정) ① 군인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상이연금·공무상요양비 또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 부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가해경위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조사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비로 지급된 금액 전액
2. 상이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상이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5년분의 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복무기간 중 낸 기여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한 금액

제19조(연금수급권자의 신상변동 등의 신고) ①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금수급권자로서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상의 변동 및 가족관계 등을 적은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를 그 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상신고서에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거나, 신상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거주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연금수급권자의 신상조사) ① 국방부장관(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연금수급권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연금수급권자의 신상조사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상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상이연금 등의 종류 변경의 신청) ① 상이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

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에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를 변경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 또는 분할일시금을 청구한 사람,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신청한 사람도 동일하게 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22조(급여 지급방법) ① 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국내에 지점이 있는 금융회사 등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신관서 등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제2절 공무상요양비

제23조(공무상요양 승인) ① 군인이 법 제20조 및 법 제22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려는 경우 해당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제 24조, 제27조 및 제32조에서 "군인등"이라 한다)은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미리 그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요양기간이 명확하게 기록된 진단서
2.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요양기관에서의 치료를 승인한 의결서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확인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2. 부상·질병경위조사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공무상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참모총장 및 제73조 제4항에 따라 공무상요양급여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야 한다.

제24조(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① 제23조제3항에 따른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려는 군인등 또는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군인등은 공무

상요양기간 연장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요양 내용, 요양기간 연장 여부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요양기간 연장 결정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소속 군의 참모총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요양 승인을 받은 부상 또는 질병과 요양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한 고도의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위촉된 요양자문위원에게 자문하거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군인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요양자문)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법 20조 및 법 제22조에 따라 군병원 외의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상요양비의 심사,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추가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공무상요양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료계의 전문가를 요양자문위

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공무상요양비의 지급절차) ① 요양기관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료비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청구서에 따라 해당 진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21조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은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2. 치유된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에 대하여 수술[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 수술과 의지(義肢)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받으려는 군인등은 공무상 재요양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요양기관에서의 치료를 승인한 의결서
2.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재요양 내용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요양 관련 의무기록의 사본
4.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의 사본

③ 제2항에 따라 재요양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재요양 승인 여부와 재요양기간(재요양 승인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군인등의 소속 군의 참모총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재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비용을 부담하여 군병원이나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재요양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3항에 따른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려는 군인등 또는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군인등"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재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군인등"으로, "요양기간"은 "재요양기간"으로 본다.

제28조(공무상요양비 지급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2.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②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비"란 다음 각 호의 요양비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으로는 정상적인 치료가 곤란하거나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여 별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에 필요한 약제(藥劑)·진료·처치(성형수술을 포함한다)·기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2. 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비의 지급수가(支給酬價)를 초과하는 비용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제29조(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공무상요양비)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상요양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요양비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2.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제30조(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시작한 경우에는 요양을 받는 사람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제23조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마친 군인이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1조(요양기관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결정서 사본을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요양종결) ① 국방부장관은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사람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등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상이연금

제33조(상이연금의 청구) 법 제26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상이연금 청구서를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소속하였던 부대의 장(연대 및 이에 준하는 단위부대급 이상의 지휘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장해경위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상이연금등급의 결정)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상이연금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장해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상이등급을 정한 후 그 상이등급에 따라 별표 4에 따라 종합상이등급을 결정한다.

② 별표 3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에 정해진 장해에 준하여 그 상이등급을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상이등급의 개정)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의 개정을 받으려는 상이연금수급권자는 상이등급 개정 신청서에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개정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 상이

연금수급권자의 장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수급권자의 장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군병원에서 상이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상이연금수급권의 소멸)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수급권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연금증서 반납 통지서에 심의회의 심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본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37조(상이연금수급권 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청구)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퇴역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연금증서를 다시 발급한다.

제38조(상이연금수급권 소멸로 인한 차액청구)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등)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2조를 준용한다.

제40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그의 상속인이 법 제31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상이연금 청구서에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서장과 소속 군 참모총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31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상이연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분할연금 및 분할일시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 ③ 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의 수급권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또는 분할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분할연금 및 분할일시금의 청구 절차 등) 분할연금 및 분할일시금의 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1조를 준용한다.

제4절 장애보상금

- 제43조(장애보상금 가산금)** ①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견기간 중의 근무"란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해외파견기간 중의 근무를 말한다.
-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급: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계급에 따른 지급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
 2. 제2급: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8배에 해당하는 금액
 3. 제3급: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
 4. 제4급: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
- ③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사망한 날 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말한다)자 기준고시 환율로 한다.

제44조(장애 정도의 판정)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의무조사위원회가 조사 대상자의 임상기록·진찰·검사·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기록에 의하여 조사한 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정한다.

제5절 재해유족급여

제45조(상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청구)

- ① 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상이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증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임신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녀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5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은 그 소속하였던 부대의 장이 발행하는 사망경위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등의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자녀 등의 부양사실의 인정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군인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7조(생사불명으로 인한 순직유족연금) ① 전투행위 중 고의가 아닌 사유로 생사불명된 군인의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사불명된 군인이 살아서 돌아온 경우에는 그 살아 돌아온 사실이 확인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순직유족연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③ 생사불명된 군인이 살아서 돌아온 후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에서 생사가 불분명했던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상이연금수급권 · 상이유족연금수급권 · 순직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친족은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상이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수급권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사망진단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최종 순위의 상이유족연금수급권자 또는 순직유족연금수급권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이유족연금수급권 또는 순직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에 제49조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이유족연금수급권자 또는 순직유족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 의무자
2. 재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미성년자로서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19세가 된 경우: 본인
4. 장애가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애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제49조(상이유족연금수급권 및 순직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상이유족연금수급권 또는 순직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사망진단서(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그 사망정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애가 해소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50조(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법 제38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수급권자 또는 순직유족연금수급권자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특수직무순직의 인정 범위)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별표 5와 같다.

제52조(사망보상금 가산금) ①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중 재외근무수당의 가지역 해당 지급액(중위 이하 군인은 대위의 가지역 지급액에 별표 6에 따른 계급별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재외근무수당 가지역지급액”이라 한다)의 3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사망한 날 또

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말한다)자 기준고시 환율로 한다.

제6절 부조급여

제53조(재난부조금의 지급기준 및 청구) ① 법 제40조에 따라 재난 부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재난의 범위는 화재·홍수·호우·폭설·폭풍·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1. 군인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2. 군인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② 재난 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이 완전히 소실(消失)·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39
2.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26
3.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13

③ 재난부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난부조금 청구서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확인한 후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군인"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군인 중 선순위자를 말한다.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군인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군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군인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군인의 직계비속 중 군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군인에게 지급하되, 군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군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지급한다.

1.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③ 법 제41조에 따라 가족사망조위금 또는 군인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확인한 후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양하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양하던 군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7절 급여의 제한

제55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제1항에서 “퇴역연금”은 “상이연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상이연금”으로, 같은 조 제4항에서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잔여 퇴직수당 청구서”는 “잔여 상이연금 청구서”로 본다.

제56조(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의 제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4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57조(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 제한의 예외) 법 제43조제1

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법 제45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무와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제58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한다.

제3장 심사의 청구

제59조(심사 청구의 절차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 청구서에 이유서 및 관계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변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47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를 받은 재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명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해당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재심위원회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청구서에 적힌 사실만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60조(심사 청구의 승계)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심사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을 청구인으로 본다.

제61조(재심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재심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재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재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3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재심위원회는 제59조에 따라 심사 청구를 받으면 그 심사 청구와 관계되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재심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64조(심사 청구인의 출석) 법 제48조제6항제1호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심사 청구인은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청구인은 보좌인을 동반할 수 있다.

제65조(심사의 결정)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해당 급여결정기관의 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6조(결정의 효력) 재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7조(재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재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에 간사장 1명 및 간사 1명과 3명 이내의 서기를 둔다.

② 간사장·간사 및 서기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68조(재심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① 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인재해보상업무 및 군인연금업무를 직접 소관업무로 하는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심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9조(재심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70조(시효의 연장)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받을 권리를 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1년간 그 시효기간을 연장한다.

제71조(효력발생기간) 법 제50조에 따른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은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이 시효 완성일 전인 것으로 한다.

제72조(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① 국방부장관(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단체
·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
2.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원행정처장
3.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행정안전부장관
4. 소득자료 및 사업자등록자료: 국세청장
5. 지방세 과세자료, 토지·건축물·자동차등록자료 및 매장·화장
관련 자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6. 보수월액자료,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및 건강검진 결과자료: 국
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7.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및 실종신고자료: 경찰청장
8. 형사재판 판결문 사본: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
9. 출입국자료: 법무부장관
10. 재외국민 등록자료: 외교부장관
11. 장애인 등록자료: 보건복지부장관
12. 공무원연금 가입과 수급자료 및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자료: 공
무원연금공단 이사장
1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1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자료: 국가보훈처장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해당 자료를 보유한 단체·기관

제73조(급여의 결정 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2호나목에 따른 장애보상금에 관한 결정
2. 법 제7조제3호라목에 따른 사망보상금에 관한 결정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결정·지급 및 환수

가. 상이연금

나. 상이유족연금

다. 순직유족연금

라.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마. 재난부조금

바. 사망조위금

2. 법 제7조제2호나목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공

무상요양비의 결정·지급 및 환수에 관한 권한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위임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심사 및 지급 업무

2.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정산 업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업무

⑤ 국방부장관이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정한다.

1.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1호의 사항과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과 합의한 사항

제74조(장부의 비치) 국방부장관은 급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각종 급여청구서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5조(서식의 제정 등)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법 제24조, 법 제54조 및 이 영 제7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업무를 위

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연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개정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47조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53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55조에 따른 벌칙 적용에 관한 사무
7. 제11조에 따른 유족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에 관한 사무
8.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에 관한 사무
9. 제19조에 따른 제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10. 제23조,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무상요양,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및 재요양 승인에 관한 사무
11. 제23조, 제33조 및 제45조에 따른 조사·확인에 관한 사무
12. 제32조에 따른 요양종결에 관한 사무
13. 제49조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에 관한 사무
14. 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

라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증명서를 발급(연금증서의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수급권의 확인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5407호 군인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7년 7월 1일 전에 사망보상금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099호 군인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급여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급여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099호 군인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군인연금법」(법률 제63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 및 환수금에 가산할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같은 영 제26조제1항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099호 군인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의 환수는 같은 영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제출한 청구서 등은 이 영에 따라 제출한 청구서 등으로 본다.

제5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중 “「군인연금법」 제26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군인연금법」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또는 동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으로, “「군인연금법」 제26조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금액”을 “「군인연금법」 제30조,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 또는 동법 제35조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금액”으로 한다.

②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③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또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시행령」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한다.

④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군인연금법」 제31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로 한다.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

(제2조제1항 관련)

대상자	인정기준
배우자 · 자녀 · 부모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던 경우 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 1)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자녀 · 조부모	1.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던 경우: 인정 2.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공무상 부상

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 1) 군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2) 군인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3)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4)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5)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6) 군인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7)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나.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그 부상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

2. 공무상 질병

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1) 공무수행 중 방사선·자외선·엑스선·유해광선·극초단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2) 공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3)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 4) 공무수행 중 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1)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 2)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

다.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1) 공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2) 공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 3) 공무수행 중 습지·산지·초지(草地)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4)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5)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6) 공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라. 근골격계 질병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근육·힘줄·골격·관절·척추 등에 발생한 질병

마.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공무수행 중 돌발적인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및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바. 암 질병 또는 악성질환

공무수행 중 석면·벤젠·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질병 또는 악성질환

사. 정신질환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아. 공무상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게 발생한 질병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의 질병

- 1) 공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자.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그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질병

3.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부상·질환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 수행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상이등급의 구분

(제34조 관련)

1. 제1급

- 가.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나.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 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라.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마.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바.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사.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아.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 제2급

- 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나.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 다.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라.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마.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3. 제3급

- 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나.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 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라.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마.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제4급

- 가.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 나.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다.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라.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마.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바.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사.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제5급

- 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나.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다.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마.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바.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사.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 제6급

- 가.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 나.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다.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라.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마. 척주의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 바.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사.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아.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제7급

- 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나.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다.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마.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바.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사.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아.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자. 한 팔에 가관절인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 차.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카.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파.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비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말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의 경우에는 말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2개 이상의 장애에 대한 종합상이등급표

(제34조제1항단서 관련)

상이등급(1) 상이등급(2)	7	6	5	4	3	2
7	4	4	3	3	2	2
6	4	4	3	3	2	1
5	3	3	3	3	2	1
4	3	3	3	2	2	1
3	2	2	2	2	1	1
2	2	1	1	1	1	1

비고 : 상이등급(1)에 해당하는 등급과 상이등급(2)에 해당하는 등급이 상호 만나는 란의 등급을 종합상이등급으로 한다.

특수직무순직의 인정 대상이 되는 직무

(제51조 관련)

1. 심해(深海)에서의 해난구조, 잠수작업 또는 수중파괴작업
2. 불발탄 제거, 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改修) 업무
3. 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에서 낙하산으로 강하,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 레펠·패스트로프 훈련
4.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이나 수상으로 벽암지(碧巖地) 상륙 임무
5. 고압의 특수전류 분야 업무
6. 비무장지대나 접적(接敵) 해역에서의 수색 및 정찰임무
7. 화생방 및 화공약품 등 위험물 취급 업무
8. 항공기, 헬기, 잠수함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작전임무
9.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임무
10. 경호업무
11. 전사에 해당하지 않는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임무
12. 재난현장에서의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활동(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13. 간첩 체포임무
1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의 계호(戒護)업무
15. 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
16. 산불진화작업(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로서 각 군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직무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 산정을 위한 계급별 조정비율

(제52조제1항 관련)

계급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
조정 비율	96/100	93/100	100/100	99/100	98/100	86/100	83/100	75/100

비고 :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되어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하사에 대해서는 병에 대한 조정비율을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군인연금과	
연 락 처	(02) 748 - 6672